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(엄태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05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18.

발의자 : 엄태영 · 김은혜 · 김정재
윤한홍 · 이만희 · 박정하
강명구 · 고동진 · 김태호
김상훈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출산일 전 1년 이내부터 출산일 이후 5년 이내에 12억원 이하 가액의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500만원 한도에서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음.

최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여전히 OCE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며, 주택은 자녀 출산 및 양육에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 이므로 자녀를 출산한 부모를 위한 주택 취득세 지원에 대한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출산 · 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36조의5).

법률 제 호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6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2025년 12월 31일”을 “2028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